

3과목

2부 금융상품 비교분석

제1장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은행	일반은행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농협협동조합 / 중소기업은행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 자산운용회사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 우체국예금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우체국보험
증권회사	
기타금융기관	증권투자회사 / 증권금융회사 / 자금중개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투자전문회사

1.은행

1.한국은행

- 화폐발행,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조작을 통한 통화의 원천적 공급과 조달
- 무자본특수법인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량의 조절 및 자금의 효율적 배분등을 도모
- 모든 은행은 법정준비금 및 초과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비치
- 예치금 계정을 통한 수표와 어음 잔액을 결제시켜주는 중앙집중결제 의 기능을 수행
- 예금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재할인을 통하여 자금 공급
- 정부가 재정대행기관으로서 국고출납 업무 대행

2.일반은행

- 시중은행 : 은행법에 의한 설립과 전국을 영업구역 /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 업무도 수행/카드업법에따른 카드업무/방카슈랑스
- 지방은행 : 영업구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 (대구,전북,부산은행)
- 외국은행 국내지점

3.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은 재원조달을 정부출자자본, 정부 및 해외로부터의 차입금과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개발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한국수출입 은행등은 은행업무와 거의 유사
- 농.수협 협동조합을 제외한 특수은행은 정부가 자금대부분을 출자하였으며 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통제
- 은행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정

2.제2금융권

- 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기업외화자금,설비금융)/신용협동기구/상호저축은행/우체국

3.증권관계기관

- 증권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금융회사

2장 금융상품

1.은행의 금융상품

- 예금은 예금자에 대해 임차계약/ 은행에 대해 소비임차계약
-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

구분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보통예금 수시입출식	가계당좌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수시입출식	정기예금 거치식	★주축청약예금 거치식	기업자유예금 수시입출식	MMDA 수시입출식
가입대상	개인/법인	신용상대 양호한 개인	실명 개인	제한없음	20세 이상 1인1계좌	법인/개인사업자	제한없음
예치한도 적립한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M~5Y	지역별.평형별 예치	제한없음	제한없음
계약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년(경과시 자동재예치)	제한없음	제한없음
계약금액							
금리	자율 (최저금리)	3M 원금 가산복리	자율	자율	자율	실예치기간별 차등금리 적용	예치금액에 따라 이자율 차등
취급기관	은행	은행	은행.우체국	은행.우체국	은행(수출입,산업은행제외)		은행
세금우대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		
예금보호	○	○	○	○	○	○	○

특징				기한부예금 =>저축성 강화	▶ 가입 후 2년경과 - 1순위 ▶ 가입 후 6M 경과-2순위 ▶ 작은평형->큰평형 변경 => 1년후 청약 가능 ▶ 큰평형->작은평형 변경 => 모집공고일 이전 즉시 청약 가능	당좌예금/보통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 경쟁상품 중금사/증권사-CMA 자산운용사-MMF	
						★ 구분	예금보호	금리/배당
						은행 MMDA	O	확정금리
						증권사 CMA	X	실적배당
						중금사 CMA	O	실적배당
						자산운용사-MMF	X	실적배당

구분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외화예금	생계형비과세저축
적립식	적립식	적립식	적립식			기존예금.신탁상품에 특약형태로 가입
가입대상	제한없음	20세이상	1.18세이상무주택자 2.85㎡이하 1주택자 (3억이하) 그리고 세대주	세대주 /무주택자	수시입출식 =>외화보통예금 적립식 =>외화정기예금 외화당좌예금	1.60세이상 (여55세이상) 2.장애인 3.상이자 4.생활보호대상자
예치한도 적립한도		자유적립 /정액적립	분기별 300백만원 이내			3,000만원 한도
계약기간	6M ~5Y	2Y~5Y	7Y~10Y			제한없음
계약금액	1만원이상/월		1만원 단위	2만~10만/월		
금리	자유					금융상품별이율 (신탁은 실적배당)
취급기관	은행	은행 (수출입,산업은행제외)	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우리는행		금융기관+ 직장공제회
세금우대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내 1년 이상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	비과세 =>7년 이상 가입 시 소득공제=> 불입액 40%, 300백만원이내	소득공제=> 불입액 40%, 300백만원이내		3천만원 한도 비과세 * 만기제한 없어 중도해지. 만기시에도 비과세 혜택
예금보호	O	O	O	O	X	
특징		85㎡ 이하 민영주택 중형국민주택 청약권 가입기간 2년 후 청약예금변경가능	한도내 중복가입가능 ▶ 해지 시 추징금액 * 1년 이내 중도해지 =>8%.60만원한도 *5년 이내 중도해지 =>4%,30만원한도	85㎡ 이하 국민주택 중형국민주택 청약권 납입금액만큼 청약예금전환가능 1순위=2Y경과후 24회 2순위=6M경과 후 6회	외화매입 후 외화예금은 원칙적 원화로만 인출가능	한도내 중복가입가능

- 상호부금 : 계가 변천된 제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도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은행이 가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급부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소정의 부금납입을 약정하는 예금이며 가입대상자는 개인 및 중소기업자
-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 함
- * 생계형비과세 특약형태로 연계 불가능한 상품으로는 CD,표지어음

청약가능면적(전용면적기준)	예금액		
	기타 시 및 군	광역시	서울,부산
85㎡ (27.5평형)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2㎡ (30.8평형)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02㎡ 초과 ~135㎡ (40.8평형)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35㎡ 초과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 주택청약예금의 가입대상
 - 20세 이상 국민
 - 20세 이상 재외동포
 - 당해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외국인
 - => 2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적용안됨

2.실세금리반영 금융상품

1)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
- 무기명활인식,환금상, 안정성,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은행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증권사나 증권회사에서 살 수 있다
- 취급기관 : 은행(발행사).증권사.증권사(유통기관)
- 발행대상 : 제한없음
- 수익률 :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 30일 이상 예치 하며 90일 일반적, 예치한도 제한없음(5백만원 일반적)
- **예치기간 동안의 액면금액에 대해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차감하여 발행한 후(할인발행) 만기지급시 소지인에게 액면금액을 지급**
- 만기전 은행에서 중도해지 불가능하며 유통시장(증권사.증권사)에서는 매매거래 가능
- * **예금보호 안됨**

2)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ing Agreement : RP)

- 일정기관 경과 후 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재매수하거나 재매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 채권매매방식
- 자금 수요자는 채권매각에 따른 자본손실 없이 단기간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 일시적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도 자본손실 위험 없이 자금을 운용 할 수 있다
- 가입대상자는 제한없으며(개인.법인) **대상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예금보호 안되지만 안정성은 높다)**
- 매매단위는 제한 없으며 일반적 1천만원 이상이며 **실세금리연동형 확정금리**
- 만기가 지난 후에는 별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통장거래(부실위험방지)** 이루어지며 중도환매시 약적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 * **예금보호 안됨**

3)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을 다시 여러장으로 쪼개어 한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 발행하는 어음
-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적 단기금융상품(3M ~ 6M 이내의 단기여유자금운용에 유리)
-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정성이 높음**
- 만기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
- **할인방식**이므로 만기시 액면 금액을 지급
- 증권사에서는 표지패토링어음과 표지무어음 두 종류가 있음
- 금융기관 및 기간 : [은행 : 30일~360일][상호저축은행 : 1~180일][증권사 : 30~180일]
- **실세금리연동형**
- 예금보호상품 * 참조 [어음 종류 : 자발(발행)어음- 증권사.예금 보호 / 기업어음 - 기업.예금비보호]

4)금융채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은행들이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하여 각각의 근거법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
- 은행과 증권회사가 취급/시장금리와 연동/할인채, 복리채, 이표채/원리금지급을 발행은행이 보증
- 세금우대종합저축한도내1년이상가입시 세금우대혜택

5)후순위채

- 발행은행이 파산할 경우 주주보다는 우선하여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예금채권자등 다른 채권자 보다는 순위가 뒤지는 채권
- 발행은행 파산시 원금손실 위험/ 양.수도 절차 통한 양도 가능
- 발행은행은 보완자본(준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본충실화를 위하여 발행(BIS비율 충족)
- * BIS비율 = 자기자본÷총위험자산 ≥ 8%
-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고수익
- 은행, 증권회사 취급/5년 이상/복리채.이표채/예금비보호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33%) 신청 가능

2.금전신탁

- **신탁설정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로서 재산관계제도
- 신탁의 법률관계 성립 요건 : 신탁관계인, 신탁행위, 신탁재산
- 금전신탁 :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인수, **금전으로 교부하는 신탁형태**
- 재산신탁 : 금전외 신탁재산으로 인수, **신탁재산을 현상 그대로 수탁자에게 교부하는 방식**
- * 위탁자 = 수탁자 => 자익신탁
- * 위탁자 ≠ 수탁자 => 타익신탁

구분	신탁(금전신탁)	예금	채권
재산관계	신탁재산(신탁계정)	고유재산(은행계정)	고유재산(은행계정)
계약관계인	위탁자.수탁자.수익자(3차)	예금자.은행(2차)	채권자.은행(2차)
계약의 성질	신탁행위(계약.유언)	소비임치계약	유가증권매매계약
	신탁법	민법	상법
이익분배	실적배당(운용수익-신탁보수)	약정이자	확정이자
배당률(이율)	실적배당	약정금리	확정금리
원본보존	원칙적 원본보장 의무 X	원금.약정이자 지급의무	원금.약정이자 지급의무
규제법률	신탁법, 신탁업법	은행법	상법, 증권관련법률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 금전신탁의 경우 원본보장이 되는 경우 : 개인연금/노후생활연금신탁(신규가입X)/근로자퇴직신탁(신규가입X)
- * 신탁 평가는 시가평가(예외 : 2001년 이전 개인연금은 장부가 평가)
- * FUND는 시가평가(예외 : MMF 이나 장부가와 시가 차이가 0.5 이상일 경우 시가평가)

1.금전신탁의 종류

1)맞춤형신탁

- 고객이 운용대상(부동산,국채,선물옵션등), 운용방법 및 운용조건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은행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신탁기간 종료시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주문형 신탁상품
-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내에서 1년이상 가입시 세금우대혜택
-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2)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

-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
- 33% 소득세율로 소득세(소득세30%, 주민세3%)33%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소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 및 지자체 발행채권에 운용/ 예치기관에 상관 없이 분리과세 신청 가능

3)노후생활연금신탁은 신규가입 중단

4)개인연금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3백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혜택있으며 연금수령시 소득공제분과 연금이자에 대해 세금 부과
-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분기별 3백만원 한도내 / 개인연금저축(2001년이전) 과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6백만원까지 가능
- 적립기간은 10년이상 1년 단위로 수익자가 만55세가 넘을때까지(보험은 62세)
- 연금지급기간은 적립기간만료일로부터 5년이상 1년 단위로 정함(확정형)
- 실적배당이며 금리연동형 또는 확정형
- 2001년 이전 : [비과세 -10년이상 가입시][소득공제 - 5년이상 미유지시 추징/적립액 40% 내/72만원까지] ★
- 2001년 이후 : [연금수령시 정상과세 - 소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해 5.5% 원천징수] ★
- [소득공제 - 5년이상 미유지 추징/적립액100%/3백만원한도(퇴직연금포함금액)]
- 만기전 중도해약이나 일시금형태 지급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정상과세 (기타소득세 20%)
- 특별중도해지사유(사망,천재지변,해외이주,퇴직,폐업) 이거나 5년 이상 적립 후 해지에 대해서 소득공제분은 추징 안하나 이자소득세는 추징
- 가입자는 만기전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변경 가능
- 2001년 이후 연금지출가입의 경우 5년 이내 중도 해약시 연간납입금액 누계액(3백만원)에 2.0% 가산세 부과
- 2001년 이전과 이후 가입자는 6백만원 까지 가입가능하고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372만원이며 연금수령시 소득세가 부과
- 소득공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음
- 연금지출 과 개인연금저축 상호이전 불가 : 소득공제한도와 소득세 부과기준이 상이
- 시가평가상품(2001년 이후) 을 장부평가상품(2001년 이전) 으로 전환불가하며
- 장부평가상품(2001년 이전) 을 시가평가상품(2001년 이후) 로 전환 가능
- 계약이전 후 계좌통합 금지 / 계좌의 분할이전,일부이전 금지
- 압류,가압류,질권설정 계좌 이전 금지 : 수익증권의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 후 계좌이전 허용(대출금 상계금지)
- 예금보호

■ 금융기관별 개인연금의 특성

구분	은행 (농,수협 중앙회)	생보사	손보사	자산운용사 유추일펀드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수익률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적립방식	자유식	정액식	정액식	자유식	정액식	정액식
연금지급기간	확정형	확정 및 종신형	확정형	확정형	확정 및 종신형	확정 및 종신형
중도해지시	원금, 일정 이자	일정기간 불입 원금 확보	일정기간 불입 원금 확보	원금, 일정 이자	일정기간 불입 원금 확보	원금, 일정 이자
형태	신탁	보험	보험	신탁	보험	보험
예금자보호법	보호제도적용	보호제도적용	보호제도적용	비보호(자체 보호)	비보호(자체 보호)	비보호(정부보호)

5)재산신탁

[금전채권신탁]

- 위탁자가 보유한 일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양도가능한 채권을 신탁하여 자금조달과 추심,관리,처분 및 재무구조를 개선 목적

[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하여 증권보관, 이자배당금, 상환금 수령, 종자대금 불입, 담보제공 등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신탁종료시 신탁원본 및 수익을 운현현상대로 교부

[부동산신탁]

- 부동산을 수익자의 이익 또는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처분, 담보 및 개발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운용하고 현상대로 교부
- 부동산관리신탁 : 임대차 관리, 시설 유지 하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
- 부동산처분신탁 : 종합적 관리 처분을 수탁하여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
- 부동산담보신탁 : 신탁등기하고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 또는 지급보증 담보로 대출기관에 제공하여 대출 가능

3.증권회사의 금융상품

1.증권저축

- 취급하지 않음

2.랩어카운트

- 여러가지의 자산운용관련서비스를 하나로 싸서 고객의 기호에 적합하게 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
- **잔액평가금액에 근거하여 일정비용의 수수료**를 받으며 **증권매매수수료는 내지 않는다**(위탁 매매에는 매매수수료 발생)
- 자산운용서비스 : 투자자문, 증권매매,보관, 운용보고서,잔액보고서, 투자계정의 평가 및 투자성과에 대한 자문
- **유추일펀드형 랩**은 상담을 통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최우수 펀드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전략을 제안
- **컨설팅트 랩**은 고객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투자스타일을 반영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 및 개별주식에 대한 투자전략을 제시

■ Wrap Account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자산을 근거로 운용수수료 안정적 수익기반	영업직원의 재교육

증권회사	간접적 수익기인 이익상충적응(고객의 신뢰) 고객관계 긴밀화,장기화 투자상당사독립성약화 투자상당사소속의식강화	수수료총수입이 감소할 가능성
영업직원	이익상충적응 -고객선택에기여	독립성 약화 고객영향력약화 거래 기준시 보다 보수감소
고객	소액으로 전문가서비스 주문형상품-고객수요부족 거래 많아도 단일수수료 영업직원 의존 탈피	주가하락시 수수료부담 일괄수수료로 불필요한서비스대가지불
투자자문업자	고객저변확대 수수료관계없는 신속적 운용 사무비용절감	운용보수의 감소 수수료이상의 운용성적적 요구부담

3.지수연동펀드(Exchange Trading Fund : ETF)

- 인덱스 펀드이며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
- ETF가 설정,해지되는 발행시장 에서는 지정판매사(AP : Authorized Participant) 을 통해서 ETF설정과 환매가 발생하고
- 유통시장에서는 거래소를 통한 지정판매사와 일반투자자들이 매매거래
- 발행시장은 차익거래시나 대규모 설정, 해지시에만 이용

■ 지수연동펀드와 유추얼펀드의 비교 		
구분	지수연동펀드	유추얼펀드
장중매매가능성	실시간 매매가능	종가에 의해 결정된 펀드 NPV에 따라서 설정방법으로 투자 투자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의사결정
환매	실시간 거래이므로 환매가격을 즉시 결정	환매신청일 다음날 종가로 환매금액이 결정 투자자는 환매금액을 모르고 환매
공매도	공매도 또는 대주에 의한 매도가 가능	공매도 또는 대주에 의한 매도가 불가능
보수	일반펀드에 비해 보수 낮으며 매매시 매매수수료	일반적인 유추얼 펀드 보다 보수 높음
거래비용	수수료 부담이 없음	설정,해지에 따른 거래비용을 다른 투자자가 부담
시장충격비용	매수,매도 호가간의 시장충격 비용이 있음	의사결정과 실행과의 불일치로 기회비용 손실 가능성

4.주가지수연계증권

- 금융기관별 구분 :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 수익실현방식에 의한 구분
 - [녹아웃형 및 볼스프레드형]
 - : 계약기간 중 주가지수가 한번이라도 약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약정한 확정수익률로 수익지급 하고 아니면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지급
 - [디지털형]
 - : 옵션만기일의 주가지수가 약정한 수준 이상 또는 이하에 도달하면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아니면 원금만 지급
 - [리버스컨버터블형]
 - : 옵션만기일의 주가가 약정한 수준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일정 수익을 지급

■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의 비교 			
구분	주가지수연동예금 ELD : Equity-Linked Deposits	주가지수연동증권 ELS : 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지수연동펀드 ELF : Equity-Linked Fund
상품형태	정기예금	유가증권(공모,사모)- 거래소 상장	수익증권(펀드가입)
자금운용구조	대출금 및 유가증권+주가지수옵션	채권+주식워런트증권.주가지수옵션.선물	펀드
원금보장여부	만기시 원금100% 지급 보장	만기시 원금의 일정비율	원금보존추구형 실적배당
수익결정방법	주가지수에 따른 약정수익	주가지수에 따른 약정수익	유가증권(워런트증권제외)운용 수익
중도해지가능여부	중도해지가능(해지수수료)	중도환매불가(증권매매통한 현금화)	중도환매가능(환매수수료 부담)
취급기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 ELD의 수익실현

- 예상 운용수익중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데 주가상승 시 옵션행사를 통한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 주가지수가 지속상승하더라도 ELD의 수익률이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데 옵션매도자의 리스크 과다노출 방지를 위해
옵션매입자의 수익을 약정된 일정수준으로 확정하기 때문
- 주가하락시에는 옵션의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최대손실규모는 정기예금이자발생예상분에 한정/ 만기시 이자가 없을 가능성
- 정기예금기준이 부과되며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만기는 대부분 1년 이며 중도해지시 고율의 수수료 부과

* 예금자보호 : ELS,ELF

5.주식워런트 증권(Equity Linked Warrant ; ELW)

1)개념

-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

[콜 워런트]

-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발행자로부터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결제가격-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
기초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라 이익이 발생

[풋 워런트]

-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차액(권리행사가격-만기결제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라 이익이 발생

2)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

[발행조건]

- 증권회사만이 주식과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주식워런트 증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증권사만이 매도 가능**
- 기초자산은 코스피100 구성주식, 이를 기초로 하는 주식바스켓과 코스피 200주가지수
- 현금결제 및 만기시 행사가치가 있는 경우 자동권리행사(T+2영업일)
- 만기일에만 권리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 주식의 만기평가금액은 **최종거래일 포함한 직전5거래일의 산술평균가격**
- 주가지수의 평가금액은 **최종거래일의 주가지수 증가**

[상장요건]

- 발행자는 **장외파생금융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현재 10개사)**
- 발행총액은 **10억원 이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해 분산요건을 갖추고
- 잔존기간 권리행사기간은 상장신청일 현재 3일 ~3년 이내
- 거래소 회원 증권회사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LP계약)**
- => 만기 1개월전까지만 유동성 공급계약에 의한 증권사 매수하므로 개인이 매도 할 수 없는 가능성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할 수 밖에...

[증권거래]

-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시간은 09~15시 (**호가접수 08시 ~15시**)이며 매매수량단위는 10좌
- 지정가 호가(IOC-Immediate or Cancel 체결 후 미체결 수량 즉시 취소/ FOK-Fill or Kill 전량체결이 안될 경우 전량 취소)
-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대응증권으로 지정 제외(*가격하락시 담보가치 급락 가능성)

3) 주식워런트 증권 특징

[경제적 기능]

-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 보유주식 활용도 제고 : 증권회사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워런트 증권을 발행 활용도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
- 증권시장의 가격효율성 증대 : 다양한 형태의 차익거래증가를 통한 균형가격성립 촉진

[특징]

- 레버리지 효과 : **주식워런트 증권**의 가장 큰 특징이자 경쟁력 실물자산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큰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 한정된 투자위험 : 투자자는 매수포지션만 보유하기 때문에 손실은 주식워런트증권가격에 한정되며 이익은 무한대
- 위험해지기능 : 주식워런트 증권매수를 통해 보유자산의 가격이 반대로 움직임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고 보유자산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
- 시장상황과 무관한 새로운 투자수단 : 활황장세, 침체장세와 무관하게 투자기회를 제공
- 높은 유동성 : 거래소에 상장되며 발행자의 유동성 공급

[주식워런트증권의 위험]

- 상품의 복잡성 : 주식보다 가치 측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 **콜 워런트의 경우 주가 하락폭 보다 더 큰 폭으로 가치 하락 할 수 있다**
- 자본이득의 소득이 없다 : 배당이 없으며 주가변동에 따른 자본이득 뿐
- 주주가 아니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이 없다

4)주식 워런트증권의 가격

[가격구조]

- **주식워런트증권가격 = 행사가치(내재가치) + 시간가치**
- 콜 워런트의 행사가치 = 기초자산가격-권리행사가격(*권리행사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주식시장에 매도하여 차익)
- 풋 워런트의 행사가치 = 권리행사가격-기초자산가격(*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권리를 행사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차익)
- 시간가치는 잔존기간동안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등에 따라 얻게 될 기대가치로 프리미엄
- 잔존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회피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이므로 **만기일에 가까울수록 프리미엄은 행사가치 또는 0 에 근접**

[가격결정요인]

- 투자자의 매수.매도에 의한 가격결정과 다양한 요인이 있음
- 만기시에는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인 행사가치에 의해 결정
- 콜 워런트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풋 워런트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수록 주식워런트증권가격은 상승
- 콜 워런트의 경우 권리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풋 워런트의 경우 권리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주식워런트증권가격은 상승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이 클수록 콜,풋 상관 없이 주식워런트 증권 가격은 높아진다
- 잔존기간이 길수록 콜,풋 주식워런트 증권 가격은 비싸진다(잔존기간길수록 - 가격변동성이 크다)
- 금리는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하나 영향은 미미하다
- 콜 워런트의 경우 금리가 높을수록, 풋워런트의 경우 금리가 낮을수록 주식워런트증권가격은 높아진다
- 배당이 클수록 콜 워런트의 경우 증권가격이 낮아지고 풋 워런트의 경우 가격이 높아진다

구분	기초자산가격	권리행사가격	가격변동성	잔존기간	금리	배당
콜 워런트	비례	반비례	비례	비례	비례	반비례
풋 워런트	반비례	비례	비례	비례	반비례	비례

4.자산운용회사의 금융상품

- 투자자로부터 자금운용에 대한 위탁을 받고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배분하여 주는 증권투자대행제도

[특징]

- 신탁제도에 의한 공동투자로서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공동기금을 형성이를 동일한 주체에 의해 투자운용
- 전문가에 의한 대행투자 - 투자효율을 높이고 투자기회 확대
- 대규모자금에 의한 법률적 분산투자
-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장기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며 증권 물량 및 가격조정기능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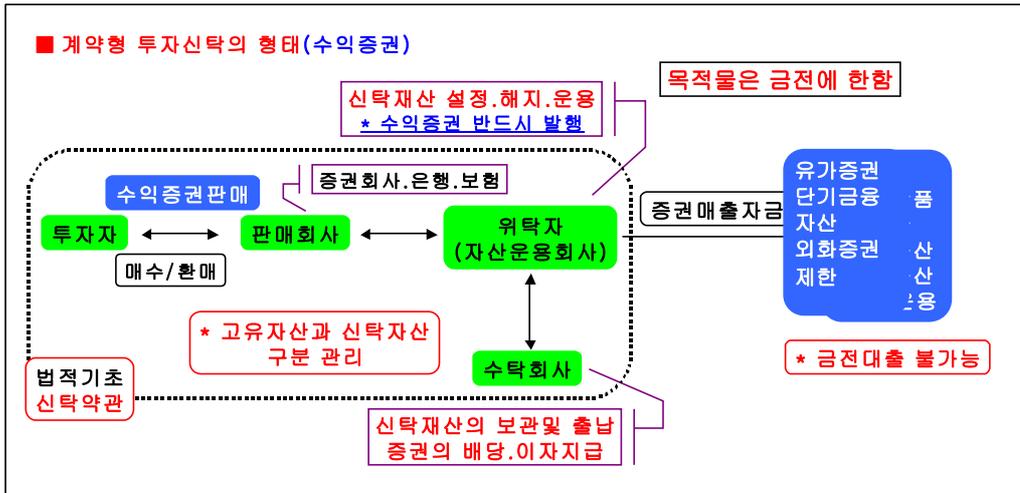
[분류]

- 법률적 조직형태 : 계약형(투자신탁)과 회사형(투자회사)
- 수익권의 환매가능 여부 : 개방형과 폐쇄형
- 운용관리권한의 위임여부 : 고정형과 관리형

[계약형 투자신탁]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간의 신탁 계약
- 신탁재산을 설정,운용하는 위탁자와 그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자간에 체결된 계약인 신탁계약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된 증서인

- 수익증권을 수익자인 투자자가 취득하는 형태(법적 기초는 신탁약관)
- 계약형 투자신탁에는 투자신탁원금의 추가설정여부에 따라 단위형/기금형(추가형)이 있다
 - => 단위형은 1회의 설정으로 추가설정 불가능 하며 해약에 의한 원본감소는 가능
 - => 기금형(추가형)은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언제든지 수익증권을 추가발행하거나 환매함으로써 추가설정 및 환매 가능
-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해 조직, 운영되는 계약형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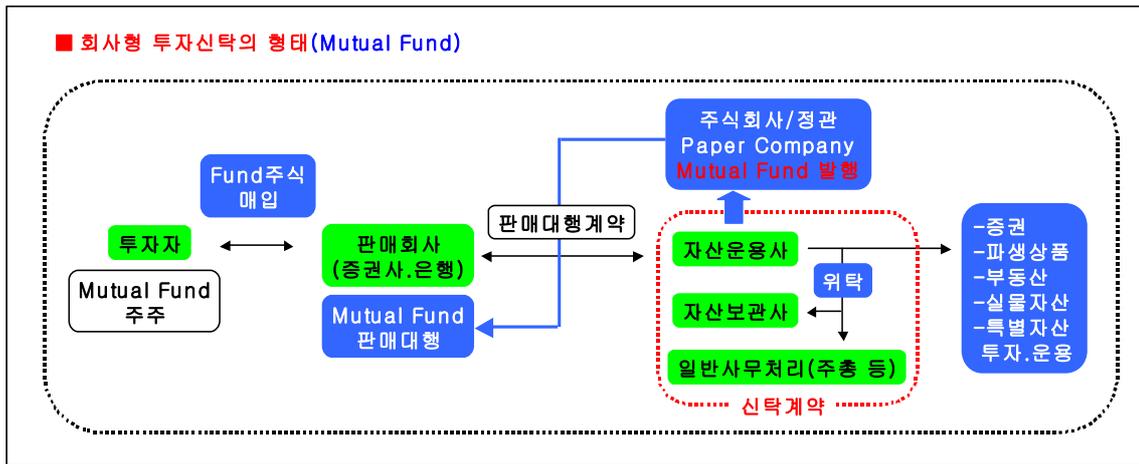


■ 증권투자신탁(계약형)과 신탁

구분	증권투자신탁(계약형)	신탁
당사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좌동
신탁재산관리	독립성(고유재산과 구분관리)	좌동
수익의 귀속	수익자	좌동
목적물	금전에 한함(금전대출 불가능)	제한없음(금전대출 가능)
운용대상	유가증권, 단기금융자산, 외화증권	
운용자	위탁자	수탁자
수익증권	반드시 발행	발행 안 할 수도 있음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	특정인과의도 가능

[회사형 투자신탁(Mutual Fund)]

- 고정형투자신탁은 당초 신탁재산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종목과 수량을 신탁기간 까지 변경 할 수 없다
- 운용형(관리형)투자신탁은 신탁약관에 의해 수탁회사의 재량으로 편입, 자유로이 변경 가능 -> 기동성 있는 운용으로 수익극대화 도모



1. 수익증권지축

- 고객을 대신해 단기투자상품인 CD, CP 등에 투자하며 실적배당형 상품
- 주식과 주식관련 선물거래 손익은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1) 수익증권의 구조

- 수익자
- 판매회사 (증권회사, 은행, 보험사) 위탁자에 속하나 별도의 신탁계약 주체는 아님
- 위탁회사(자산운용사) :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이며 수익증권 발행, 설정, 해지
- 수탁회사(신탁회사 또는 신탁업 허가 은행, 수탁자) 위탁자 지시에 따라 자산의 보관 및 출납 관리 담당하며 신탁계약의 당사자

2) 수익증권의 판매

-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을 기초로 하여 최초 1좌 1원의 비율로 발행
-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에 따라 1좌당 금액은 상승 하거나 하락

3) 수익증권의 가격

- 수익자와 판매회사간의 수익증권매매/판매회사와 위탁회사간의 신탁재산원본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 수익증권 매매기준가
- 매매기준가는 펀드를 구성하는 신탁재산을 매일 일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영업장에 게시.공고
- 1,000좌당 가격을 사용

4)수익증권의 결산

- 신탁기간 종료 시 또는 신탁계약 해약시에 실시하는 것
- 당초 원본가격인 1,000좌당 1,000원으로 기준가를 환원하며 1년 동안 발생한 기준가와외 차이(수익)을 분배금으로 지급
- 분배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과 지급 즉시 추가 설정하여 수익증권으로 재투자
- 공사채형은 재투자/ 주식형 수익증권은 양자를 선택
- 재투자 되어 매수된 수익증권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없으며 출금시 재투자된 수익증권은 우선 출금처리

5)저축금액

- 저축금액 제한하지 않음
- 수시입출식/거치식/적립식

6)환매수수료와 환매대금지급일

■ 매매에 따른 적용기준 가격 ★

거래구분	상품 종류	매매주문		적용기준가격	
매수	주식비율 50% 이상	주식형FUND	15시 이전	익일매수	당일종가
	주식비율 50% 이하	채권형FUND	17시 이전	익일매수	당일종가
	MMF	개인	17시 이전	익일매수	당일종가
		법인	17시 이전	익일매수	당일종가
	예외)Late Trading(장마감 후 매수)의 경우: + 1일				익일종가
환매	주식비율 50% 이상	주식형FUND	T + 3영업일 (4영업일)		제3영업일
	주식비율 50% 이하	채권형FUND	T + 2영업일 (3영업일)		제3영업일
	MMF	개인	17시 이전	익일 환매	익일
		법인	17시 이전	익일 환매	익일
	예외)Late Trading(장마감 후 환매)의 경우: + 1일				

* 환매수수료는 펀드별로 최소투자기간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위약금

7)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

- 증권간접투자신탁: 투자자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채권, 주식, 기업어음 등) 에 운용
- 파생상품간접투자신탁: 위험회피를 목적(투기목적)으로 간접투자자산이 10% 를 초과하여 장내외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상품
- 부동산간접투자신탁: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대출포함)
- 실물간접투자신탁: 농,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 등
- 단기금융상품펀드(MMF Money Market Fund): 초단기형 상품 *1년 이내이며 주식, 파생상품, 외화증권에 투자하지 못함
-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 모집 자금을 다른 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상품
- 특별자산간접투자신탁: 금전채권.어음.신탁의수익권.출자지분또는 권리.조합지분.지상권.부동산임차권.어업권.광업권

8)유가증권의 투자비율에 따른 분류

- 채권형: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금리선물 포함)에 투자
- 주식형: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주가지수선물,옵션 포함) 투자
- 혼합형

2.신탁형증권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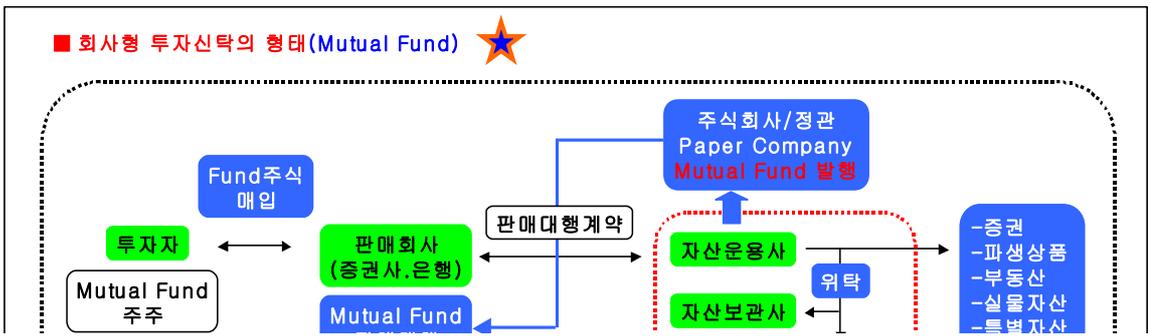
- 약정된 이율을 지급하는 신탁예금의 형식으로 투자신탁상품 중 유일하게 확정금리형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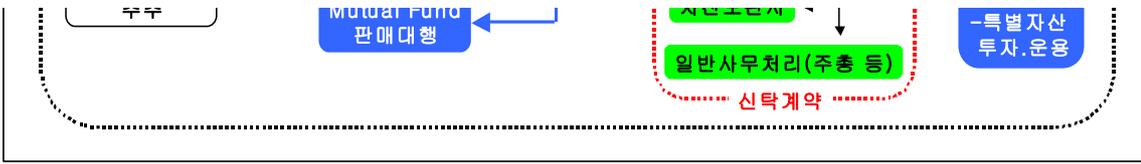
3.MMF

- 자산운용사가 투자자금을 모아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만기5년 이하의 국채 및 만기1년 이하의 통안채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실적배당상품
- 가입금액제한이 없으며 단기자금을 운용하기에 환금성이 높고 실제금리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은행의 MMDA/중금사 CMA와 경쟁상품
- 증권계좌와 연계하여 대기자금을 예치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장부가형 펀드로서 실제금리변동에 따라 펀드수익률이 변하지 않으나 시가가 장부가의 ±0.5% 변동시 채권시가평가가 적용
- * 채권형 Fund는 MMDA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시가평가
- 운용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기업어음은 A2 이상) 이상으로 제한하며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잔존만기일을 90일 이내로 제한
- 취급기관은 자산운용회사.증권회사(대형판매)
- 수시입출식

4.Mutual Fund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뒤 투자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비슷하나 주식회사형태이므로 유추할 펀드는 투자자들이 주주가 된다





- 유추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의사결정과정의 기동성이 뛰어나
- 자산운용의 상대적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대형투신사 보다
- 폐쇄형 유추펀드는 1년간 중도환매가 안되며 잦은 환매로 인한 펀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주식형 펀드의 단점을 보완
- 유추펀드는 상장되어 장내 거래가 가능
- 유추펀드는 최소투자금액이 1백만원~3백만원 이상이며 주식형 펀드는 1천원 이상
- 유추펀드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운용수수료외에 등록세, 임원보수, 회계감사보수 등 등기비용을 추가부담**
- 폐쇄형 유추펀드는 중도환매가 안되나 상장된 경우 장내에서 매각 하여 현금화 할 수 있다
- 유추펀드의 **상장요건 : 거래소 - 자본금8백억 이상 주주 1,000명 이상 / 코스닥 - 자본금8억 이상 주주 1,000명 이상**
- 세금우대종합저축한도내에서 1년 이상 가입시 세금우대혜택
- 해외유추펀드도 있다

■ 수익증권과 유추펀드의 비교

구분	수익증권	Mutual Fund
설립형태	신탁계약	주식회사
발행증권	수익증권	주식
투자자의 지위	수익자	주주
관련법	신탁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상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원천징수	채권 50% 이상 운용 : 이자소득 주식 50% 이상 운용 : 배당소득 * 주주매매의 등 비과세	운용대상에 관계없이 배당소득 * 주주매매의 등 비과세
중도환매방식	환매가능(환매수수료)	주식매각(폐쇄형) 환매(개방형)
취급기관	운용 : 자산운용회사 판매 : 증권회사, 은행, 보험사	운용 : 자산운용회사 판매 : 증권회사, 은행, 보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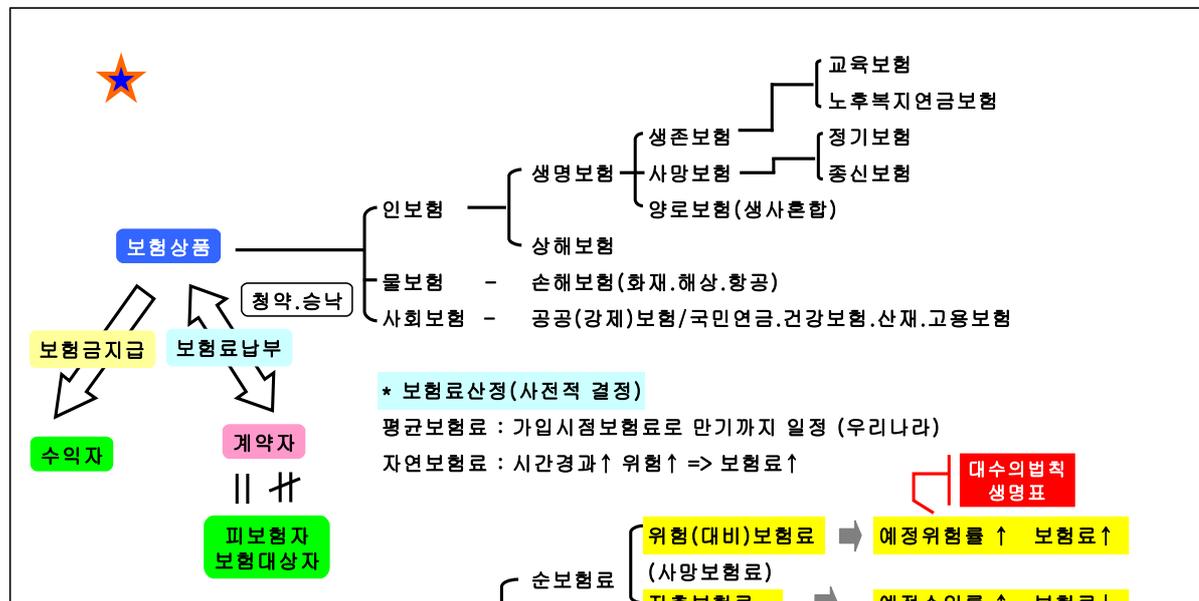
5. 엠블렐러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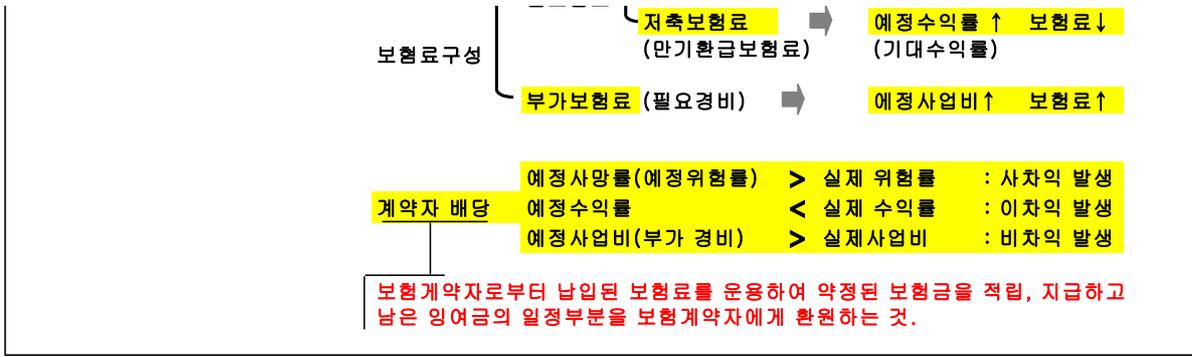
- 투자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펀드로서 하나의 약관(엠블렐러 수익증권 저축약관) 아래 여러 개의 하위 펀드로 구성
- 구성되는 하위펀드에는 MMF, 수익증권, 정보통신펀드, 코스닥전용펀드 등 회사자율적으로 7개 까지 구성
- 스포트펀드, 단위형펀드, 해외투자펀드는 편입 불가
- 장세변화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며 환매수수료가 없어 단기운용이 가능
- 세금우대종합저축한도내에서 1년 이상 가입시 세금우대혜택
- 투자신탁회, 증권회사, 은행에서 취급
- 실적배당 / 판매수수료는 1~2% / 운용수수료는 투자금액의 1% 내외/저축기간은 제한 없으며 추가형
- 연간 12회 이내에서 전환 가능(초과하면 1%이내 수수료 징구)/일부 전환불가(현재, 전산상어려움)/전환청구일 당일 전환청구취소가가능

6. 적립식 펀드

- 투자신탁 수익증권에(주식형, 채권형 등을 선택하여) 일정기간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상품
- 주가가 떨어지면 많이 사고 주가가 올릴 비싸면 적게 사게 되어 평균매입단가를 낮춤
- 장기투자하는 것이 금리 및 주가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최고의 투자 방법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은행, 종금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일반적으로 가입제한이 없으며 저축기간은 1년 ~10년 이고 판매수수료는 1~2% 내외

5. 생명보험회사의 금융상품





1. 생존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은 물론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교육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 장래의 일정시점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한 저축성이 강한 보험

1) 교육보험

-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후 약정시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음
- 계약자 사망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

2) 노후복지 연금보험

-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하여 높은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며 가입 후 5년 경과후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

2.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
- 보험기간 만료시 까지 생존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환급되지 않는다
- 정기보험(보험기간을 미리 정함) 과 종신보험
- 만기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시 고액보상

3. 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생존시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과 저축성을 동시에 가진 보험. 생사혼합보험

4. 단체보험

- 퇴직적립보험(사회보장성보험)

5.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 위험보장에 중점을 두고 암보험, 상해보험이 있으며 만기환급이 되는 만기환급형 보험과 환급 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이 있다
-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기능보다는 만기생존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강화 고수익상품 - 연금보험, 교육보험, 슈퍼재테크보험

6. 유사보험 : 체신보험과 공제

6. 종합금융회사의 금융상품

1. 발행어음(자발어음)

- 종합금융회사(한국증권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금융상품
- **가계나 기업의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
-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기간별약정금리의 60~80% 수준의 중도해지율이 적음
- 기업어음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낮으며 **예금보호대상 상품**
- **가입한도는 제한 없으며 예치기간은 1년 이내/ 확인 발행 또는 만기 일시 지급** ★
- 실세금리연동형 확정금리

2. 기업어음(CP)

- 2개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B 이상을 받은 업체가 발행한 어음으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A~D 6등급)
- CP의 확인 및 중개시장에는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가 참여
-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있으며 직접발행은 중개회사를 통한 환매가 가능하고 간접발행의 경우 투자자 요청시 인수자는 즉시 환매
- 중금상의 지급보증 유무(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에 따라 담보부 기업어음과 무담보부 기업어음으로 분류
- 제한없으나 증권사는 1억 이상/예치기간은 1년이나 90일이 보통/실세금리연동형 확정금리
- **확인 발행 또는 만기 일시 지급** ★
-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3. 어음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 : CMA)

- 기업어음이나 통화조절용 채권(통안채) 등 단기금융자산에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예탁기간에 따라 투자자에게 차등지급하는 상품
- 중금사 CMA 자산운용대상 : 어음, 채권, CD, 정기예금, 단기국, 공채 / **예금보호 대상**
- 투자신탁회사(증권회사) CMA 자산운용대상 : 국공채, 콜론, 금융기관 발행 또는 보증 어음 및 채무증서/ **예금보호 안됨**
- 예탁기간은 180일 이내/ 실적배당/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

7. 신용협동기구의 금융상품

- 예금상품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출자금 : 조합원 또는 회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금은 비과세(농특세 1.5% 부과)
- **상호금융(농,수협단위조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3년 이상 장기저축/비과세**

8. 상호저축은행의 상품

- 여유자금 운용상품 : 정기예금과 표지어음
- **목돈마련상품 : 정기적금, 신용부금, 상호신용계**
- **장기주택마련저축**
- 학자금마련상품 : 장학적금 **세금우대상품**
- 수시입출식 예금 : 보통, 저축, 기업자유예금

9. 예금보호제도

1.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모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5개 기관
 -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
 - *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서 2004년 제외 자체적인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
 - * 농,수협 중앙회는 예금보호 금융기관이 아니며 자체 자금으로 예금자 보호

2. 예금보호대상 예금

-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

■ 예금보호대상 상품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 호 대 상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MMDA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개인의보험계약 법인의퇴직보험계약 원금보존형신탁	위탁자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좌설정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고객예탁현금잔액 증권저축상품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예금 적금 신용부금 상호신용계금 표지어음
	비 보 호 대 상	실적배당신탁상품 기업어음(CP) 외화예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법인의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등 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CMA	

정부, 지자체, 한은, 금감원, 부모금융기관의 예금 / 차입금(콜)

- * 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으며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투자자산과 자기자산을 별도로 분리하고 고객 투자자산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예금보호액 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금융기관내(각 금융회사)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

4. 농,수협,산림조합 단위조합/자산운용회사/세각을금고

- 농,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각각의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예수금 일정비율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해당조합 중앙회에 적립하고 있으며 5천만원 까지 보호
- 자산운용사의 경우 고객자산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안정기금과 신탁안정조정금으로 보호 장치 마련
-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에 의거 연합회에 안전기금과 상환준비금을 적립하여 원리금 합산 5천만원 까지 보장

10. 세금우대상품

1. 비과세저축상품 종류

■ 비과세저축상품의 종류								
구분	연금저축	주택 청약예금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주택 청약부금	장기주택 마련저축	주택 청약저축	생계형 비과세저축	출자금 조합예탁금
		적립식	거치식	적립식	적립식	적립식	적립식	기존예금, 신탁상품에 특약형태
가입대상	18세이상	20세 이상 1인1계좌	1.2ha농경지 보유농민 2.20이하어선 보유어민	20세이상	1.18세이상 무주택자 2.85㎡이하 1주택자 (3억이하) 그리고 세대주	세대주 무주택자	1.60세이상 (여55세이상) 2.장애인 3.상이자 4.생보자	조합원 회원
예치한도 적립한도	1.분기 300만원 2.55세이후 5년이상	지역별, 평형별 구분 예치	5천원~ 12만원/월	자유적립 /정액적립	분기별 300백만원 이내		3천만원 한도	1인1통장
계약기간	10년 이상	1년 (자동재예치)	3Y~5Y	2Y~5Y	7Y~10Y		제한없음	
취급기관	전금융기관 (증권사제외)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은행	은행	국민은행 예원중앙회 우리은행	금융기관 직장공제회	
			일반농어민					

비과세한도	분기300만원		월단종여민 12만원/월 저소득농어민 10만원/월					1천만원
비고	1.소득공제 납입액100% 3백만원 한도 퇴직연금포함 2.연금수령시 이자 및 소득공제분 5.5% 징수	일반과세 (15.4%) 세금우대 (9.5%) 생계형비과세 中 선택	2006말가입자 비과세	일반과세 (15.4%) 세금우대 (9.5%) 생계형비과세 中 선택	비과세 *7년이상가입 소득공제 *불입액 40%, 300백만원이내 한도내 중복가입가능 ▶ 해지시 추정 * 1년이내 해지 =>8%.60만원內 *5년이내 해지 =>4%.30만원內	소득공제=> 불입액 40%, 3백만원內	3천만원 비과세 만기제한 없어 중도해지. 만기에도 비과세 혜택 한도내 중복가입가능	
예금보호	○	○	○	○	○	○	○	X

현재 비과세 상품은 : 장기주택마련저축/(개인-가입중간)연금저축/근로자우대저축(가입중단)/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생계형저축
장기주식형펀드(가입중단)/신용협동기구의 출자금,예탁금/장기저축성보험

2.세금우대종합저축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품에 대해 가입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이며 통합관리
- 통합한도 금액은 일반인은 2천만원이며 노일 및 장애자는 6천만원
- 세금혜택(우대세율)은 9.5%(소득세9% + 농특세 0.5%)

4.금융소득 종합과세

-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요 분리과세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 비과세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10년이상의 장기채의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0%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 분리과세대상인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범위

구분	조건
채권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일것
수익증권,은행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이나 신탁자산은 당해 신탁자산의 5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할 것
예금,적금.	저축계약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일 것(중도해지하지 않을 것)